



제344회 정례회

2015.11.25.

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

교육위원회 전문위원

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이 광 희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: 2015년 11월 04일

○ 회부일자: 2015년 11월 05일

3. 제안이유

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활동 및 신체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학교 및 친환경운동장에 관한 용어 정의(안 제2조)

나. 교육감 등의 책무(안 제3조)

다. 친환경 운동장 조성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라. 유해성 검사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마.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 학교운동장 개선대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바. 관계 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사.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「교육기본법」 제27조에 따라 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 친화적인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안 제2조 정의에서 “친환경 운동장”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운동장으로서 먼지 날림을 최소화하고 배수성·통기성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소재를 주재료로 한 운동장으로 규정하였고,
- 안 제3조에서는 책무로써 충청북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으며, 안 제4조에서는 ‘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한 기본 방침’ 등 6개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조사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, 조사결과 유해한 물질이 있는 학교 운동장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, 이에 필요한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친환경적인 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관 계 법 령 발 취

□ 교육기본법[법률 제13003호, 2015.1.20., 일부개정]

제22조의2(학교체육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□ 유아교육법[법률 제13226호, 2015.3.27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2. “유치원”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.

□ 초·중등교육법[법률 제12933호, 2014.12.30., 일부개정]

제2조(학교의 종류)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1. 초등학교·공민학교
2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3.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4. 특수학교
5. 각종학교

□ 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[조례 제3624호, 2013.12.27. 타법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및 교육장 등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표창대상)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충청북도 교육·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(“행사”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또는 기관·단체에게 수여한다.

제3조(표창의 종류)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공적상, 창안상, 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한다.

제8조(표창권자) 표창은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“이라 한다) 및 교육장이 행한다.

제9조(표창 방법 및 부상)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창장을, 우등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장을, 협조상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사장을 수여한다.

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(우승기, 우승컵, 상패, 공로패, 메달, 기념품, 포상금, 장학금, 연구비, 해외연수 특전 등)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.